



고용노동부

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사업 홍보 협조 요청

1.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2.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매년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, 각종 행정상·금융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 2026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역 내 우수 기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(홈페이지 게시 등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개요]

구분	노사문화 우수기업	노사문화 大賞
신청기간	2026. 3. 10.(화) ~ 4. 15.(수) 18:00	2026. 7. 16.(목) ~ 8. 18.(화) 18:00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접수처: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(www.nosa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 ○ 구비서류: 지원신청서 및 추진실적(붙임2 참조), 실적증빙자료, 납세증명서 등 ※ 반드시 노·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○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,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3~'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○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○ 노사문화 우수기업·大賞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○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○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○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	
결격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,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○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 등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○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)로 기소된 사업장 ○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	
관련문의	○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정호현 컨설턴트(02-6021-1062)	

2026년도

노사문화 우수기업



**상생의 노사관계로 미래를 열고,
사회적 책임으로 가치를 더하는
모범 사업장을 찾습니다.**

신청기간

3.10.(화) ~ 4.15.(수) 18:00

신청방법

접수처



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
(<https://www.nosa.or.kr>)



사업소개



노사문화 우수기업
및 대상(大賞) 선정

구비서류

① 신청서(서명된 스캔본), ②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파일
(한글 및 PDF) 및 증빙(PDF 파일), ③ 납세증명서(국세청 발급,
스캔본)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(스캔본)

※ 반드시 노·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

선정발표

6월 말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

신청자격

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, 결격사유에 해당하지
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(공고일 기준)

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
한함 (결격사유 및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)

문 의
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

☎ 02-6021-1062 📧 prize@nosa.or.kr

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(<https://www.moel.go.kr>) 또는
노사발전재단 (<https://www.nosa.or.kr>)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.

신청서 작성요령

1.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
가. 신청서와 부속서류인 심사항목별 내용 설명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

* 허위서류 작성 시 향후 5년간 신청자격 정지

나. 심사항목별 내용 설명서는 소정양식에 따라 실적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조·서술식으로 작성하되 계량단위로 표시되는 실적은 계량화하여 기입하고 그 내용을 요약 설명

다. 해당 사실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시기를 명확히 표시

2. 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

① 신청구분: 신청단위가 기업단위(기업 전체)인지 사업장단위(공장, 지사)인지 표시

② 기업구분

- (중소기업)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,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

업종	규모	비고
제조업	500명 이하	중소기업 * 사업장(공장 등)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구분
광업,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업, 과학·기술서비스업, 보건업·사회서비스업	300명 이하	
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, 여가관련 서비스업	200명 이하	
위 업종 외의 산업	100명 이하	

- (공공기관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함

③ 사업체명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 명칭(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칭)을 한글과 영문(영문인증서에 사용됨)으로 정확하게 기입

③-1, ③-2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주의 성명과 직책(직위)를 기입

④ 업종: 신청기업의 사업종류를 기입(예, 화학제품제조)

- ⑤ 소 재 지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주소를 기입
- ⑥ 노동조합: 노동조합 유무, 복수노조 유무, 상급단체 기입, 노동조합명(노사협의회명) 기입
- ⑥-1, ⑥-2: 노조가 있는 기업(사업장)은 노조대표자,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대표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
- ⑦ 노동자수: 신청일 기준 노동자수 합계(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수)를 기입하고 노조가 있을 경우 당해 사업장 조합원 수를 괄호 안에 기입
- ⑧ 자 본 금: 신청일 이전 최근 회계 연도 말 기준
- ⑨ 연매출액: 신청일 이전 최근 회계 연도 말 기준
- ⑩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입
- ⑩-1 산재보험관리번호:
- * 사업장 단위 신청시 ⑩-1에 해당 사업장 산재보험관리번호 기재
 - * 기업단위 신청시 ⑩-1에 본사의 산재보험관리번호를 기재하고 '⑬사업장현황'에서는 소속된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관리번호 기재
- ⑩-2 고용보험관리번호: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재확인 위해 기재 필수
- ⑪ 사업개시일: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재(합병에 따른 사업 승계 시는 그 이전 사업 개시일 기재)
- ⑫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시기: 우수기업 선정 시기를 명시(예: '20년)
- ⑬ 사업장현황: 기업단위의 경우 여러개의 사업장(공장, 지사 등)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모두 기입
- ⑭ 기업단위는 사업주가 서명하고, 사업장 단위는 사업장 대표자가 서명
- ⑮ 노조가 있는 기업(사업장)은 노조대표자,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대표가 서명
- ※ 모든 업무연락은 e-mail을 이용하므로 e-mail주소를 정확하게 기재**

< 붙임 2 >

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

1. 사업장 일반현황

노사개요

사업체	노동조합(노사협의회)
◦ 명칭:	◦ 명칭:
◦ 소재지:	◦ 상급단체:
◦ 대표자:	◦ 대표자:
◦ 노동자수:	◦ 조합원수:
◦ 업종 및 주요생산품:	◦ 설립일:
◦ 설립일:	◦ 임<단>협만료일:
◦ 연락처:	◦ 연락처:
◦ 연혁:	◦ 연혁:

노사관계 변천사

※ 당 사업장의 노사관계 변천 과정을 약술

노사관계 안정요인 및 계기

※ 갈등을 겪은 후 안정되었다면 그 배경, 계기, 안정요인 등을 기술

※ 갈등 관계가 없이 계속 안정을 유지하였다면 안정요인 등을 기술

2. 노사상생협력 추진 체계도

※ 노사상생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 및 비전 등을 기술

※ 현재 운영 중인 갈등관리 방식(체계) 등을 기술

3. 기업경영 현황

※ 단위사업장의 경우, 기업의 총액도 함께 기술

(단위: 원)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
1. 연간 매출액			
- 연간 매출액(증가율)			
2. 당기 순이익			
- 당기 순이익(증가율)			
3. 1인당 노동생산성 (매출액/전체 노동자수)			
4. 인건비 총액			
-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			
5. 임금			
- 전 직원 평균임금			
- 평균임금 중 변동급 비중			
- 신입사원(남성) 평균임금			
- 신입사원(여성) 평균임금			

4. 노동환경 현황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
1. 고용			
- 노동자 수			
-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			
- 이직률			
- 명예퇴직 실시여부			
- 비정규직 노동자 수			
- 여성 노동자 수			
- 여성 관리자 수			
- 장애인 노동자 수			
- 장년(55세 이상) 노동자 수			
2. 노동시간			
- 주당 평균 노동시간			
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			
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			
3. 일·생활 균형			
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			
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			
4. 안전보건			
- 산업재해 발생건수			
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			
5. 상생협력			
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		
- 협력사와 동반성장 정책수립 여부			

5.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

- ※ 심사기준의 평가항목 순서대로 기술하되, 세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실적도 포함
- ※ '23.1월-신청시점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

□ 요약 자료

대항목	세 부 항 목	추진실적(신명조 13p) (요약하여 개조식 기술)
I. 노사관계	1. 최근 3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	○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극복사례 기술 (요약)
	2.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	○ 추진실적 기술(요약)
II. 노사 문화 실천요소	1. 열린경영과 노동자 참여 (1)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	○ 추진실적 기술(요약) (이하 같음)

※ 심사항목의 서류심사 기준의 항목순서에 따라 한글(신명조), A4종 형태로 5쪽 이내 작성

□ 심사 자료

대항목	세 부 항 목 (신명조 13p)	추진실적(신명조 13p)
I. 노사관계	1. 최근 3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 (신명조 11p)	○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극복사례 기술
	2.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	○ 추진실적 기술
II. 노사문화 실천요소	1. 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 (1)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	○ 추진실적 기술 (이하 같음)

※ 심사항목의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글(신명조), A4 형태로 50쪽이내 작성하되 추진실적 증명자료는 뒷편에 붙임 순으로 첨부